

#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44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도로 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'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, '23년도 지출계획 상 예치금액이 당초 대비 20% 초과(50%)하여

나. 당초 예치금 18,801백만원을 28,171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.

다. 2023년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: 백만원)

< 지출 부문 >					
구분	당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(C)	증감 (D=C-A)	증감률 (D/A*100)
계	18,801	19,271	28,171	9,370	50%
예치금	18,801	19,271 (+470)	28,171 (+8,900)	9,370	50%

※ 최종 의회 의결액(당초, 제315회 정례회)대비 재무활동(예치금) 20%초과(57%)변경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이병석 (☎2133 - 8162)